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상 및
주무관청 통보 신설〉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57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상 및 주무관청 통 보 신설(정일영의원안)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일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13.

다. 회 부 일 : 2026. 3.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허위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2%)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과 세액공제 남용으로 이어져 공정한 과세질서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제2항을 신설하여 반복 불성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또한 국세청장이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하여 지정·고시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기부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Ⅲ. 검토의견

1.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상 및 주무관청 통보 신설(정일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4) ○ 가산세 납부 -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u>5%</u> -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의 경우: 영수증 금액×<u>5%</u> -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u>0.2%</u> ○ <신 설> ○ <신 설>	□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4) ○ 가산세 납부 -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u>10%</u> -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의 경우: 영수증 금액×<u>10%</u> -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u>0.5%</u> ○ <u>가산세를 부과받은 내국법인이 가산세를 부과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불성실 행위를 반복한 경우, 가산세 납부: 해당 가산세×200%</u> ○ <u>주무관청 통보</u> - <u>국세청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관할하는 주무관청(법인·단체 등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국법인으로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포함)에 해당 사실을 통보</u>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불성실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일영의원안 2026. 3. 13. 발의(의안번호 17457)

□ 개정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율을 기부 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한편, 국세청장이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세법은 기부금을 지출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개인의 경우,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됨. 세액공제율은 기본 15%이고,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분은 30%임.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익성의 정도 및 기부주체 등에 따라 일정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2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기준으로 ① 특례기부금, ② 일반기부금 및 ③ 위 2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① 특례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②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손금 산입한 특례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¹⁾이 지출한 일반기부금에 대해서는 20%p 높은 30%의 손금 산입한도를 적용하며, ③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한편,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²⁾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

그리고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5%’이고,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그 외의 경우, 가산세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5%’임.³⁾ 또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법령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0.2%’임.⁴⁾

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3) 당초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와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그 외의 경우의 가산세율은 2%였는데, 2019년 법개정을 통해 5%로 인상된 것임.

4)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개정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는 등 가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가산세 부과사실을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통보함으로써 법인이 기부금 발급·작성·보관을 거짓없이 성실하게 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임.

기부금 불성실 가산세 결정·경정금액은 2024년 1억 3,700만원이고 해당되는 법인수는 총 34개임. 가산세 결정·경정금액은 2023년 4억 6,200만원 대비 감소했고, 해당 법인수도 2023년 61개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법인들이 불성실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상황임.

[기부금 불성실 가산세 결정·경정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기부금 불성실 가산세 결정· 경정분	294	54	83	40	134	32	462	61	137	34

자료: 국세통계포털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불성실 행위 반복 시 가산세액을 인상하면 불성실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행위의 기대이익을 낮추고, 억지력을 강화하여 현행 제도에 비해 보다 실질적인 강도 높은 대응책으로 기능할 수 있음.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한 법인이 부당한 이익을 수취하고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개인 및 법인도 부당한 세금

혜택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위법행위에 대응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소득세법」상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율을 고려하여 가산세율 인상 여부 및 인상 수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을 불성실하게 한 개인에 대해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산세율은 「법인세법」상 법인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율과 동일한 수준임.⁵⁾

개인에 부과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5)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수준에 비해 법인에 부과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개인과 법인 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음.⁶⁾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법인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면 개인에 대한 가산세율도 함께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만 반복행위에 대해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4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2),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5) 등 서류 제출·보관 등과 관련된 다른 가산세의 경우에는 반복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따라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한하여 반복행위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은 반복행위 방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설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6)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최근 2019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운영 경과 확인 후 필요시 제재 추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55
